



KOLAS-SR-008 : 2020

현장 시험 및 교정 수행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한국인정기구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MOTIE, Korea

제1조 적용범위

이 문서는 사업장소재지, 부속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시험 및 교정을 수행하는 KOLAS 공인기관 인정 및 평가기준에 적용되는 추가기술요건을 기술하고 있다.

제2조 인용표준

이 요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에 규정된 관련 정의와 다음의 용어 정의에 따른다. 다만, 연도표기가 없는 기준은 최신본을 적용한다.

KS Q ISO/IEC 17000 적합성평가 - 용어 및 일반원칙

KS Q ISO/IEC 17025 시험 및 교정 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제3조 용어와 정의

3.1 현장 시험 및 교정 (Field testing and calibration) : 사업장소재지, 부속시설(시험실 또는 표준실) 이외의 장소에서 수행하는 인정된 범위의 시험 또는 교정을 말한다. 이러한 현장 시험 및 교정은 다음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3.1.1 불특정 장소에서의 현장 시험 또는 교정 : 고객의 요구에 따라 사업장소재지, 부속시설 이외의 불특정 장소(고객의 시설 포함)에서 비상시적으로 시험 또는 교정을 실시할 목적으로 공인기관이 실시하는 시험 또는 교정

3.1.2 이동시설에서의 현장 시험 또는 교정 : 시험 또는 교정을 위한 특정한 환경조건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전용이동차량 등에 시설을 갖추고 고객이 요구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실시되는 시험 또는 교정

제4조 품질경영시스템

4.1 현장 시험 또는 교정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품질문서에는 다음 사항을 식별해야 한다.

a) 현장 시험 또는 교정 수행이 가능한 분야 및 범위

b) 현장 시험 또는 교정을 수행하는 조직의 책임 및 권한, 소재지와의 관계

4.2 현장 시험 또는 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내부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비고 다만, 현장 시험 또는 교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방문하기에 제한적인 경우, 모의 실증을 통해 요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5조 방법의 선정, 검증 및 유효성 확인

5.1 현장 시험 및 교정을 수행하기 위한 인정분야 및 범위별 작업지침을 보유하여야 한다.

5.2 현장 시험 및 교정 방법이 사업장소재지 및 부속시설에서 실시하는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환경조건, 사용 장비 등의 차이에 의해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절차 및 보정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5.3 현장 시험 및 교정을 수행하는 기관은 현장에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검증기록으로 정해진 관리 한계 내에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불특정 장소에서 수행하는 현장 시험 및 교정의 경우, 이러한 검증기록은 현장 시험 또는 교정이 수행되는 대표적인 환경을 고려할 수 있다.

제6조 기술기록

6.1 성적서 발행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얻거나 생성된 기술기록의 보관·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은 공인기관에 있다.

6.1.1 현장에서 얻어진 데이터에 대한 백업절차를 보유해야 하며, 이는 현장 시험 및 교정을 수행한 시점의 데이터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비고 현장에서 수행되는 시험 및 교정에서의 데이터는 추적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기관 스스로의 검토가 필요하다.

6.1.2 백업파일은 해당 장비가 측정 시 생성한 파일 전체를 수정없이 보관해야 하며, 보관 방법은 측정 시 생성된 일자가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비고 현장평가 시 장비 운영 후 생성되는 파일의 종류를 비교하고, 백업된 파일이 현장 시험 및 교정 수행 시점의 것임을 검토하여 생성한 파일 전체를 수정 없이 보관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확인하여야 한다.

6.2 현장에서의 샘플링

샘플링이 특정 지점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한 근거와 선정된 지점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림, 사진, 도표 등을 이용하여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비고 현장시험결과를 확인한 후 시험절차에 따라 추가시험이 필요(시험 중 일부 또는 전체가 유효하지 않은 결과임을 확인한 경우)한 경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추가 시험의 사유 및 관련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해당 시험의 현장시험 사진, 출장기록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제7조 결과보고

7.1 현장 시험 및 교정에서 얻어진 결과는 발급된 성적서 상에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7.2 현장 시험 및 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온도·습도 등 환경측정결과와 수행된 장소 등 관련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7.2.1 수행된 장소의 기재는 일반적으로 주소로 표기가 가능하나, 고객이 의뢰된 장소가 주소 내 특정 지역으로 국한될 경우 상세정보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비고 1 이러한 상세정보는 특정 지역을 국한하여 지칭할 수 있는 방법이
어야 한다.

비고 2 현장 시험 및 교정을 수행한 장소는 고객이 의뢰한 계약과 일치하
여야 한다.

7.2.2 현장시험에서 수행된 장소가 주소로 표기가 어려운 경우, 현장시험
수행 장소를 추적할 수 있는 이동 경로, 활동 지역 등으로 표기할 수 있다.

비고 1 선박운항 중의 현장시험은 00 해상과 IMO번호(선박식별번호)를 함
께 기재할 수 있다.

비고 2 철도(차량) 등 이동수단 운행 중의 현장시험은 ‘00 ~ 00 구간 철
도(도로)’ 로 기재할 수 있다.

제8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12월 0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고시)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현장교정 수행을 위한 추가 기술요건」(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146호, 2012.03.27.)은 폐지하며, 종전의 추가기술요건에 따른 기타 행위는 이 기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록 A. 현장 시험 및 교정 인정 프로세스

1. 신청

이동시설을 포함한 모든 현장 시험 또는 교정은 관리하는 사업장소재지가 조직구조에서 식별되어야 하며, 신청서류에 부속시설과 같이 해당 사업장소재지의 하위분류로서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서류는 각 운영요령 제18조(인정신청 및 평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서 현장 시험 및 교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추가하여 작성하고, 현장 시험 또는 교정과 관련된 장비, 인원, 시설 등이 식별되어야 한다.

2. 현장평가

불특정 장소에서 현장 시험 또는 교정이 수행되는 경우, 대표적인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현장 방문이 제한되는 경우, 모의실증에 의해 입회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동시설을 이용한 현장 시험 또는 교정의 경우, 모든 시설의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서비스를 하는 이동시설의 경우 대표적인 것을 샘플링할 수 있다.

3. 인정 범위

현장 시험 및 교정 항목은 KOLAS 공인 시험 및 교정 기관의 인정서에서 식별되어야 한다. 최초인정 후 현장 시험 또는 교정의 범위 및 측정능력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인정기구에 신고하고 그 적합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비고 불특정 장소에서의 현장 시험 또는 교정 서비스가 수행되는 경우, 인정서에 해당하는 항목에 ‘Y’ 로 식별한다. 이동시설은 해당 사업장소재지의 부속시설과 같이 하위분류로 주소 대신 차량번호 또는 관리번호로서 식별되어야 한다.

추가 기술요건 체크리스트

(현장 시험 및 교정)



한국인정기구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항목	세부항목	평가결과	
		적합	부적합
제4조 품질경영시스템			
4.1 품질문서 내에 현장 시험 또는 교정에 대한 식별	○ 현장 시험 또는 교정 수행이 가능한 범위 (환경조건, 측정범위 등)의 식별		
	○ 현장 시험 또는 교정을 수행하는 조직의 책임·권한과 소재지와 관계		
4.2 내부심사 범위	○ 내부심사(계획 등) 시 현장 시험 또는 교정을 포함하여 수행하였는지의 여부		
제5조 방법의 선정, 검증 및 유효성 확인			
5.1 작업지침	○ 현장 시험 및 교정을 수행하는 인정분야 및 범위별 작업지침 보유 여부		
5.2 방법의 적절성	○ 사업장소재지·부속시설에서 수행하는 방법과 현장 시험 및 교정에서 수행하는 방법이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환경조건, 사용장비 등 차이를 고려하는 절차 및 보정 방법 등을 포함하였는지의 여부		
5.3 방법의 검증	○ 현장 시험 또는 교정 방법의 검증기록 보유 여부		
	○ 불특정 장소에서 수행되는 방법의 경우, 대표적인 환경을 고려하였는지의 여부		
제6조 기술기록			
6.1 기술기록 유지	○ 현장 시험 및 교정에 대한 기술기록의 보관·유지·관리 실시 여부		
	○ 현장에서 얻어진 데이터에 대한 백업절차 보유 및 수행한 시점의 데이터인지의 입증		
	○ 장비가 생성한 파일 전체에 대한 수정 없이 보관하는지의 여부		
	○ 백업파일의 일자가 측정 시 생성된 일자로 유지되는지의 여부		

항목	세부항목	평가결과	
		적합	부적합
6.2 현장 샘플링	○ 현장 샘플링이 특정 지점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 근거 및 지점에 대해 기재하였는지의 여부		
제7조 결과보고			
7.1 결과의 식별	○ 현장 시험 및 교정 결과의 성적서 상 식별		
7.2 결과에 대한 정보	○ 환경조건 등이 현장 시험 및 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환경측정결과와 수행된 장소 등 관련 정보가 성적서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 특정 지역에서 수행된 경우, 수행 장소의 상세 정보 기재 여부		
	○ 수행된 장소의 주소표기가 어려운 경우 추적할 수 있는 이동 경로, 활동 지역 등으로 적절히 표기하였는지의 여부		